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2.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2018년 11월 13일

나.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청렴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목적, 수상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상장 및 시상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광목)

- 본 제정 조례안은 청렴한 자세로 구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청백공무원상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청백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를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대리 수상 및 시상 시기에 대해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청렴결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우리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4.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구민이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경우 공무원의 선심성 행정이 우려되고,
- 수상자에게 희망부서를 우선배치하고,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하는 것과 200만 원, 300만 원의 시상금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함.

나. 수정내용

- 안 제3조 제1항 중 “또는 구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삭제한다.
- 안 제5조 제1항 전체를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로 한다.
- 안 제5조 제2항 중 “3백만원”을 “1백만 원”으로, “2백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 안 제5조 제3항 중 “수상은 취소”를 “수상을 취소하고”로 하고,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을 취소한다.”를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로 한다.

5.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호	관련 번호
----------	-----	----------

제안연월일 : 2018. 12. 12.

제안자 : 허홍석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 구민이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경우 공무원의 선심성 행정이 우려되고,
- 수상자에게 희망부서를 우선배치하고,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 상 우대 조치를 하는 것과 200만 원, 300만 원의 시상금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함.

2. 수정내용

- 안 제3조 제1항 중 “또는 구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삭제한다.
- 안 제5조 제1항 전체를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로 한다.
- 안 제5조 제2항 중 “3백만원”을 “1백만 원”으로, “2백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 안 제5조 제3항 중 “수상은 취소”를 “수상을 취소하고”로 하고,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을 취소한다.”를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또는 구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제1항 전체를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
을 수여한다.”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3백만원”을 “1백만 원”으로, “2백만원”을 “50만 원”으로
한다.

안 제5조 제3항 중 “수상은 취소”를 “수상을 취소하고”로 하고,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을 취소한다.”를 “상장, 상패 및 시
상금 등은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선정절차)①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 또는 <u>구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u>에 대하여 <u>검증을</u> ----- ----- 상정의뢰 한다.</p>	<p>제3조(선정절차)①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u>검증을</u> ----- ----- 상정의뢰 한다.</p>
<p>제5조(상장 및 시상금)①구청장은 수상자에게 <u>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u></p>	<p>제5조(상장 및 시상금)①구청장은 수상자에게 <u>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u></p>
<p>②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u>3백만원</u>, 본상은 <u>2백만원</u>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u>1백만원</u>, 본상은 <u>50만원</u>으로 한다.</p>
<p>③수상 후----- -----<u>수상은 취소, 상장,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특전은 취소한다.</u></p>	<p>③수상 후----- -----<u>수상을 취소하고, 상장,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및 인원)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이하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이라 한다)은 공무원 근무경력 10년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수상자 선정은 대상과 본상 각각 1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 및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
2.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제3조(선정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검증을 한 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포창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렴성
2. 헌신봉사성
3. 공직사회기여도
4. 지방행정발전기여도
5. 공·사생활건전성
6. 기타 특이사항 등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서 추천할 수 없다.

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2.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4.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사람

제5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1백만 원, 본상은 50백만 원으로 한다.

③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7조(시상 시기)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표창대상자의”를 “표창대상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에 의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
----------	----

발의년월일 : 2018년 11월 일

발의자 : 김길자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써, 청렴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목적, 수상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상장 및 시상금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입법예고 (2018. 10. 30 ~ 11. 4.):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대상 및 인원)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이하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이라 한다)은 공무원 근무경력 10년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여하며, 수상자 선정은 대상과 분상 각각 1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청렴·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 및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자
2. 불의를 배격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제3조(선정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 또는 구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검증한 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포창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렴성
2. 헌신봉사성
3. 공직사회기여도
4. 지방행정발전기여도
5. 공·사생활건전성
6. 기타 특이사항 등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서 추천할 수 없다.

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2.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 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 4.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사람

제5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3백만원, 본상은 2백만원으로 한다.

③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제6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7조(시상 시기)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표창대상자의”를 “표창대상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에 의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로 한다